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7 선고 2018가합5557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광장

담당변호사 백정화, 정송연

피 고 1. E

2. F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민

변론 종결 2021. 1. 13.

판결 선고 2021. 1. 27.

주 문
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 E와 소외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, 2부동산에 관하여 2015. 2. 23.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 A, B에 대하여 각 162,370,687원, 원고 C, D에 대하여 각 54,123,562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.
2. 피고 F와 소외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5. 2. 23.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 A, B에 대하여 각 162,370,687원, 원고 C, D에 대하여 각 54,123,562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한다.
3. 피고 E, F는 공동하여 원고 A, B에게 각 162,370,687원, 원고 C, D에게 각 54,123,5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G(3/8 지분), H(3/8 지분), I(1/4 지분)의 공유로 등기된 서울 송파구 J 대 700.3㎡ 및 인접한 K 대 694㎡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 위에 지하 1층,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이 건축되었다.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4. 11. 21. G(650/1356.12 지분), H(678.06/1356.12 지분), I(28.06/1356.12 지분)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.

나. G은 1994. 11. 25. 이 사건 건물 중 I 명의의 28.06/1356.12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G의 지분은 H의 지분과 동일하게 678.06/1356.12 지분(650/1356.12 지분 + 28.06/1356.12 지분)으로 되었다.

다. H는 1996. 6. 28. 이 사건 토지 중 G 명의의 1/8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의 지분은 1/4 지분(3/8 지분 - 1/8 지분)으로, H의 지분은 1/2 지분(3/8 지분 + 1/8 지분)으로 변경되었다.

라. L은 1997. 1. 21. 이 사건 토지 중 1 명의의 1/4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M은 2008. 2. 26.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H의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로써 M은 이 사건 토지 중 1/2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678.06/1356.12 지분을 취득하였다.

바. 원고들은 2010. 1. 29.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M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A, B가 각 3/8 지분씩, 원고 C, D가 각 1/8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로써 원고 A, B는 각 이 사건 토지 중 3/16 지분($1/2 \text{ 지분} \times 3/8 \text{ 지분}$) 및 이 사건 건물 중 254.2725/1356.12 지분($678.06/1356.12 \text{ 지분} \times 3/8 \text{ 지분}$)을, 원고 C, D는 각 이 사건 토지 중 1/16 지분($1/2 \text{ 지분} \times 1/8 \text{ 지분}$) 및 이 사건 건물 중 84.7575/1356.12 지분($678.06/1356.12 \text{ 지분} \times 1/8 \text{ 지분}$)을 각 취득하였다.

사. 원고 B는 2012. 1. 16.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D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로써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3/16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지분만 339.03/1356.12 지분($254.2725/1356.12 \text{ 지분} + 84.7575/1356.12 \text{ 지분}$)으로 증가되었다. 반면 원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/16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상실하였다.

아. N, O은 2015. 2. 12.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G의 지분에 관하여 각 1/2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로써 N, O은 각 이 사건 토지 중 1/8 지분($1/4 \text{ 지분} \times 1/2 \text{ 지분}$) 및 이 사건 건물 중 339.03/1356.12 지분($678.06/1356.12 \text{ 지분} \times 1/2 \text{ 지분}$)을 취득하였다.

자. G은 2015. 2. 23. 피고 E와 별지 목록 기재 제1, 2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, 2015. 2. 27.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차. G은 2015. 2. 23. 피고 F와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, 2015. 2. 27.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과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G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의 678.06/1,356.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2015. 2. 12. 매도하였는바,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들에게,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2010. 1. 29.부터 G이 이 사건 건물지분을 매도한 2015. 2. 12.까지 각 지분비율에 따른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G은 채무 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제1, 2부동산을 피고 E에 게, 같은 목록 기재 제3부동산을 피고 F에게 각 증여하였는바, G과 피고들 사이의 각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들에 대하여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구한다.

나. 판단

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G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1) 원고들의 G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석재, 판사 권소영, 판사 김경준

별지

목 록

1.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 693.4㎡
2. 서울특별시 송파구
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송파구
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
 1층 342.72㎡
 지층 36.54㎡
 옥탑 19.80㎡
3.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
 [도로명주소]
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15층아파트
 1층 866.02㎡
 2층 834.66㎡
 3층 834.66㎡
 4층 834.66㎡
 5층 834.66㎡
 6층 834.66㎡
 7층 834.66㎡
 8층 834.66㎡
 9층 834.66㎡

10층 834.66㎡

11층 834.66㎡

12층 834.66㎡

13층 834.66㎡

14층 830.34㎡

15층 825.93㎡

지층 839.39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 12524.1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28.57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12524.1분의 66.1. 팔.

1) 피고들이 2021. 1. 11.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,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이 사건 소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, 원고 A, B, C은 전부 패소 판결, 원고 D에 대하여는 'G이 28,308,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2. 13.부터 2020.

6. 2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, G은 2020. 12. 4. 원고 D에게 위 판결에서 인용한 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.